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2. 12.



행 정 위 원 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 정 위 원 회]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2022년 12월 12일

제안자: 행정위원장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2022. 11. 28.(월) ~ 12. 5.(월)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행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가나다순)	사무보조자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현호, 최봉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팀 • 전문위원 • 정책지원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감사장소	감사내용	비고
1일차	영등포구청 제1감사장, 동주민센터 (영등포본동, 여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오전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질의 및 답변 - 강평 	

※ 토요일 ~ 일요일: 지역의정활동 및 2023년도 예산안 검토

6. 감사방법

- 해당 감사반의 각 국별 실시
- 현황보고 및 청취
- 보충자료 제출 요구
-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 답변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시정 및 지적사항: [붙임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붙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위원회]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12.2. (금)	신홍식	<p>[사무전결처리 규칙의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동 48-1, 48-5 부지에 대한 오피스텔 개발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인근 트럼프월드2차아파트 및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 전임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었음. ○ (주)화이트코리아는 2020. 5. 20. (주)에스케이글로벌로부터 해당 부지를 330억여원에 매입해 2022. 6. 30. 건축허가를 받아 2022. 7. 8. (주)서도코퍼레이션에 732억여원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김. ○ 2022. 6. 30. 건축허가 당시 영등포구 건축과장은 전임구청장의 임기 마지막날 전결처리한 후 상급자인 국장에게 사후에 구두 보고하였고, 1년 이상 천막을 치고 반대농성을 하던 주민들은 전임구청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이후 건축과장은 서울시로 진출하였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의 건축허가 관련 세부사항에 건축물 층수 기준을 추가하고 건축물 면적 기준을 재조정하여,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결처리가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함. ○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전결처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전결을 신속하게 회수하거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함. ○ 같은 규칙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사전보고”로 하여 중요하고 이례적인 전결사항에 대한 권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과장이 전결처리할 수 있음.</p> <p>○ 다만,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음.</p> <p>○ 또한,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 하지만 위 건축허가의 경우, 지하7층~지상29층 규모의 대형 건축물이고,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건물 붕괴 우려 등 인근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과장의 전결처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위 규칙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p>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결처리 사항인 건축허가의 경우, 영등포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13개는 건축물 면적과 함께 층수에 따른 기준이 함께 설정되어 있어 대체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결은 국장 이상 상급자의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층수에 대한 기준 없이 건축물 면적만으로 건축허가 전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11개 자치구의 경우에도, 과장 전결은 대부분 1만제곱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 최대 2만제곱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영등포구는 3만제곱미터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층수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건축물도 과장 전결이 가능해, 건축과장이 책임의 정도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설령 부적정한 전결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규칙 제7조 및 제9조 등은 실효성 있는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	12.2. (금)	신홍식	<p>[문화도시센터 관련 조례 미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문화재단은 2019. 10. 24. “3급 본부장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에 대한 「영등포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제9조를 신설했는데, 해당 내용이 별표 1 직제 및 기구표에서는 2022. 9. 28. 개정으로 삭제됨. ○ 문화도시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기능을 정하고 설치·운영하는 것임. ○ 위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2021. 5. 13.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22. 12. 2. 현재까지도 이에 따른 규칙은 제정되지 않음. ○ 그런데 문화재단은 근거가 되는 규칙도 없이 2022. 4. 3급 상당 계약직원을 채용하고 2022. 6. 사무실을 개소하여 2022. 12. 직원 8명을 채용하는 등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운영에 하자있는 절차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서는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규칙을 정하지도 않고 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임. ○ 따라서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일체의 시행을 중단하고 시급히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요구함. ○ 아울러 문화도시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설치·운영 되어야 하는 바, 문화재단 조직과 별도로 직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영등포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과 같은 규정 별표 1에 따른 직제 및 기구표가 서로 달라 부적정하므로, 이를 동일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2. 7. 위탁기관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과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이사장 채현일) 간 영등포 문화도시센터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문화재단 직제상 문화도시 정책팀 아래 문화도시센터가 운영되도록 되어있어 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3	12.1. (목)	우경란	<p>[영등포 스마트 메디컬특구 협력기관 중 환자 유치를 담당하는 유치업체의 경우 영등포 관내 업체가 20%밖에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스마트 메디컬특구의 핵심인 환자의 유치를 담당하는 유치업체의 신규 선정 업체 8개 중 1개 업체만 영등포구 내 기관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타지역 기관임. ○ 또한, 재지정 기관이 5개인데, 5개 모두 타지자체 기관임. ○ 스마트메디컬 특구의 총 18개 유치업체 중 관내 업체는 단 4곳으로 이는 20% 수준밖에 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치해, 관내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유치업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치업체의 경우에도 관내 업체를 위주로 선정하여 자급자족 스마트 메디컬특구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영등포구 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또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통역 지원, 번역 홍보 등에 국한된 업체의 혜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	12.1. (목)	우경란	<p>[청년사업 및 청년인턴제도 성과 저조 및 운영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종류의 청년지원사업과 지원금이 있지만, 청년의 취업률 면에서 성과가 매우 저조함. ○ 국·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만큼, 영등포구 청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할 청년인턴 지원사업 대상자 중 영등포구 청년은 전혀 없음. ○ 뿐만 아니라, 해당 청년인턴지원사업이 2023년 공모에서 탈락해 더 이상 국·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국·시비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되어, 2023년도부터 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지원사업이 2023년에는 영등포구 청년들로만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구민을 위해 진행하는 청년인턴사업인 만큼, 우리구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또한, 이후 진행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서, 구민의 혈세인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함. ○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구비만으로 집행하다보니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원금 지원 기간을 조정하거나, 지원금 %를 조정해서 더 많은 영등포구 청년들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능한 우리구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하며, 지원금 종료 후 청년들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임. ○ 더불어, 여러종류의 청년사업이 단기간 교육 및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질적, 양적으로 조정이 요구 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	12.1. (목)	우경란	<p>[사업별 위원회 운영의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비대면(서면)으로 개최되는 경우,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가 사업별 위원회에 따라 달라 일관성이 없음.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심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때 참석한 위원의 의견 개진 또는 위원 간 논의 과정이 없이 위원 개개인의 가부 결정만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서면) 참석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하여 규정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함. ○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화상으로 토론하는 등의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6	12.1. (목)	우경란	<p>[반장 관련 제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따르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관할 하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설치된 반을 담당하는 반장 본연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이 전무 하다 시피 하여 반장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됨. ○ 또한 반장에게는 연 2회, 설 및 추석 명절에 총 5만원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이 통·반설치 본연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반장의 역할 교육, 동행정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반장 보상품인 온누리상품권을 관내 지역 새마을금고 등의 지역 금융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일괄구매하여, 관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의 온누리상품권이 보상품으로 지급되는데, 해당 상품권은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일괄구매하여 각 행정동을 통해 반장에게 지급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런데 위 은행 지점에서 상품권을 일괄구매하는 이유가 구청에서 가까워 업무가 용이하기 때문이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됨. ○각 행정동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반장 제도와 관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일괄구매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 대기업인 금융기관보다는 관내 지역 금융 또는 상권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7	12.5. (월)	우경란	<p>[적법하고, 명확한 민원처리 요구]</p> <p>본 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구민이 감사 청구한 것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영등포구청이 정보목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함. 2.영등포구청이 공익신고 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1.~5.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생산했던 모든 문서와 사실관계 및 그간 처리과정을 빠른 시일 내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청은 민원처리에 대하여 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쉽고, 명확하게 민원 처리를 해야 할 것임.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3.영등포구 당산1동 동장이 본 민원인 집을 불법주거침입 및 폭언을 했으며, 관련 처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주장함.</p> <p>4.주민자치회의 불법 사례가 있었으며, 구청이 개입을 거부했다 주장함.</p> <p>5.법규상 정해진 서류 발급 요청에 대해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을 거부했다 주장함.</p>	<p>○또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p>
8	12.1. (목)	우경란	<p>[주차부스 부착물 정비 필요]</p> <p>○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30개소 중 7개소의 주차부스에는 영등포구 슬로건 및 각종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음.</p> <p>○그런데 위 7개소 주차부스의 부착물이 슬로건 교체 등의 이유로 제거되면서 미관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됨.</p>	<p>○출입 차량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는 주차부스의 부착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주차장 전체적인 관리 상태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p>
9	12.1. (목)	김지연	<p>[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관련 조례 미준수]</p> <p>○서울영등포초단편영화제는 14회째를 맞는 아시아 최초 초단편영화제이며, 영등포구는 본 영화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p>	<p>○조직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영화제의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함.</p>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영·지원하기 위하여 2021. 9. 23.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두어야 함. ○ 그럼에도 영등포구에서는 2022년에 해당 위원회를 단 한 번도 설치·구성하지 않았고, 영화제에 대한 2023년도 예산 편성 등 어떠한 업무추진도 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예술에 대한 주민의 문화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영화제를 통해 영상제작 교육 및 지역 영화인 육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제와 조직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요구함. ○ 나아가 국내·외 영화제 교류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영등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10	12.1. (목)	김지연	<p>[영등포구청의 건강한 인력 관리,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총무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및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인력 관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함. ○ 구청은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구청 근로자의 57%가 영등포 구민임. 공무원의 32%, 공무원의 45%, 기간제 근로자는 93%가 영등포 구민으로 채용되어 있음. 따라서 영등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는 구청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법령에 따른 주관부처를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며 관리하는 핵심 부서가 되어야 함. ○ 법령에 따른 각각의 업무는 주관부처가 진행하더라도 총무과가 그 진행 결과를 공유하여, 총무과의 주요업무인 인사 행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함. ○ 또한 각종 힐링프로그램, 상담, 교육 등은 단발적 진행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 이를 통해 개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청 근로조건 개선은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도 볼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영등포구청 공무원의 경우 정신과적 사유로 인한 요양휴직이 전체 휴직의 23.1%이며, 난임으로 인한 휴직은 30.8%임. ○ 공무직의 경우 지난 3년간 산재 발생이 15건, 기간제근로자는 28건으로 총인원 대비 산재 발생률이 공무원 0.4%, 공무직 8.4%, 기간제근로자 3.1%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더 높은 비율로 산재를 경험하고 있음. ○ 2020년에는 환경공무원 산재에 따른 노동능력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지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영등포구청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함. ○ 총무과는 인사행정과 조직 문화, 교육 및 후생 복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 인력 관리의 핵심부서임. ○ 그러나 인사제도 운영 및 근로 조건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안전, 건 	<p>선하고자 하는 인력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의 중·장기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p>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강, 교육과 관련한 업무들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컨대 산업재해와 관련한 행정적 처리에 대한 기능은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집행과 기능은 도시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음. ○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또한 교육후생팀 및 보건소에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감정노동자 및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한 업무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음. ○ 각 관련 부서에서 법률에 따라 직원들과 관련한 지원과 관리를 각 기능에 맞게 진행하고는 있으나, 부서별 진행된 정보들이 종합되어 인사 관리나 근로 환경 개선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11	12.1. (목)	김지연	<p>[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 다발구역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과 관련한 민원은 보건지원과 전체민원의 128건 중 66건으로 51.6%를 차지하는 높은 빈도의 민원임. ○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 금연 구역 뿐만 아니라 흡연 민원 다발지역의 경우도 표지판을 설치한 곳들에 대한 정확한 장소 파악과 관리를 통해 흡연으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사유지 등의 이유로 금연구역의 지정이 어려운 흡연에 대한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의 경우 흡연 민원 다발지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음. ○ 그럼에도 해당 지역은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계도를 중심으로 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나, 표지판 설치 지역 등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p>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함.</p>
12	12.1. (목)	김지연	<p>[지역 봉사활동을 위한 자치회관 환경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의 밑반찬 나눔 봉사는 지역의 어르신 및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을 연결하고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특히 사회단체 및 주민자치 활동 중 다수가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거나,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의 조리과 나눔활동은 지역활동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음식의 조리 환경은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자치회관 시설의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는 어렵지만, 각 자치회관 및 사회단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단기적으로 가능한 계획과 함께 장기적 환경개선 계획도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시설 환경개선의 이상의 가치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p> <p>○ 제239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 과 업무보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였으나, 차년도 예산 이나 업무 계획에 반영되어 있 지 않음.</p>	
13	12.2. (금)	박현우	<p>[여의동 현장민원실 인원 충원의 건]</p> <p>○ 여의도 국제금융특구는 높은 수 준의 행정서비스가 뒷받침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의동 현 장민원실(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서울국제금융센터 지하2층 상가 15호)은 여의동 발급민원(22.10.31현 재) 전체 121,723(100%) 중 45,799 (37.6%)를 전체 11명 업무전담 자 중 현장민원실 직원 3명이 담당하는 실정임.</p> <p>○ 부족한 현장 업무전담자로 인하 여 여의동 현장민원실은 발급업 무와 신고업무 등 모든 민원 업 무를 취급하지 못하고, 이해관 계인 발급업무를 제외한 제증명 발급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어 민원인과 업무담당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p> <p>○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인원 충원을 요청함.</p>	<p>○ 현장민원실은 “찾아오는 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2012 년 1월 1일 SIFC 지상 3층에 설치한 후 2016년 10월 31 일 IFC몰 STREET SHOP으 로 이전하면서 시설이 열악해졌 는데, 금융특구에 걸맞는 시설 개선 사업이 요구됨.</p> <p>○ 현장민원실(업무전담자 3명, 행 정7급 1명, 방호7급 1명, 임기 제 1명)은 인감등록, 주민등록 증 발급, 전입신고, 전월세 등록 신고, 각종 주민등록 업무를 제 외한 제증명 발급 업무만 취급 하는 실정으로 부족한 전담인원 의 충원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p> <p>○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로의 위상 강화와 활성화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정책 효 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행정서비스의 실질 적 뒷받침이 요구됨.</p>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	12.5. (월)	박현우	<p>[2023년 신설하는 동(洞)청사 관리팀의 전문성·연속성 확보방안 검토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18개 동 청사의 유지·관리·보수는 현재 동 주민센터 서무주임이 담당하고 있음. ○ 최근 복합청사 건립 등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1)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2) 여성 공무원 증가에 따른 업무 형태의 변화, (3) 관련 교육 이수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임. ○ 영등포구청은 조직개편(11월)을 확정하고, ‘자치행정과’에 기존의 ▲동행정, ▲주민자치, ▲주민협력에 ▲동청사관리를 신설하여 팀장1명, 행정2명의 신규 인사(1월)를 단행할 계획임. ○ 동청사 관리팀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바, 향후 조직의 확대·발전 과정에 있어 기술인력의 안정적 운용, 관련 기술의 축적을 염두에 둘 것을 주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관점에서 신설하는 동청사 관리팀의 청사 유지·관리·보수의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 및 운용을 요구함. ○ 장기적 관점에서 (1)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기술직을 근무 평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국으로 확보하고, (2) 전문성 있는 계약직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향후 신설하는 복합청사, 영등포구청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함.
15	12.1. (목)	양송이	<p>[신길 5구역 기부채납부지 세부 계획과 추진 필요]</p>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4 ~ 6. 4차 열린 공론장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확보에 외부재원 또는 구비 반영 여부 결정 필요. ○ 사업비 전액 구비 반영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필요.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8. 서울시투자심사 의뢰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과, 문화 시설 소관시설 아님으로 회신) ○ 22년 1월 서울시투자심재의뢰 (청소년정책과 소관시설 아님으로 회신) ○ 22년 4월 11일~12일 펜스래핑 작업 “이곳은 교육시설 예정 부지입니다” ○ 2023년 세부 계획 부재, 예산 반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민들은 도서관을 원함, 도서관으로 공간 재구성 2. 돌봄교실이 부족한 초등학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으로 복지 부서를 통한 서울시 투자심사 재의뢰. ○ 2023년 사업계획 필요.
16	12.1. (목)	양송이	<p>[영등포구 구립 도서관별 장서 부족과 어학 도서, 도서관 공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25구 자치구 중 도서관별 평균 대상자 수는 75,367명으로 3번째로 높음. 즉 영등포구는 도서관이 부족함. ○ 또한 봉사 대상 인구수가 비슷한 마포구와 동작구를 비교하면 도서관별 보유 장서, 특히 아동도서, 어학 도서가 부족함. ○ 중국어 원서를 비교하면, 영등포구립도서관 중 문래, 선유, 여의샹강 도서관은 중국어 원서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영어도서관 필요. ○ 연중 찾아가는 도서관(예를 들어 아파트, 역 주변 대상으로 자동차 문고와 순회 문고 운영).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원서 구매 필요. ○ 도서관에서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오디오북 체험부스 등으로 공간 개선 및 추가 자료 확충 필요. ○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필요.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7	12.1. (목)	양송이	<p>[야외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에는 많은 야외체육시설이 있고, 안전요원들의 항시 점검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CCTV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갖춰져야 함. ○ 특히,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확충 시설 중 X-게임장은 개인 스포츠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설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체육시설 및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필요. ○ 쇠기둥으로 된 농구대 등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 커버 설치 등 시설물 충격사고에 대비한 안전 장치 설치 필요. ○ 또한, 체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에 대비한 시설 확충 필요.
18	12.1. (목)	양송이	<p>[공평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현장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사업, 학교별 다양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영등포구 교육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 학교환경개선 지원금 21년 55억, 22년 50억, 23년 30억으로 20억 감 편성. ○ 2023년 교육경비 지원 계획 재검토 및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편성으로 프로그램 연속성 결여. 2. 프로그램 지원 상한액: 총학생수 고려 안함. 3. 가산점 부과: 산정기준 적절성 결여. 4. 특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연속성을 위해 학교 지원 금액 수정 필요. ○ 총 학생수를 고려한 프로그램비 지원 필요. ○ 학교 현장과 공평성을 고려한 가산점 부과내용 필요. ○ 현장에 맞지 않은 특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항목 개선 필요.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대상 학교 선착순 10개교 환경 개선비 1개 학교당 금 50,000천원 이내 지원:현재 1개 학교, 수요 조사 후 해당 학교 지원 예정 (안전 위협 적절성 결여, 학교 자율적 선택을 집행부가 권고함)</p>	
19	12.1. (목)	양송이	<p>[사업별 위원회 운영의 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공공급식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정기회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함. ○ 하지만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공공급식 운영에 관하여 연 2회 「서울시 공공 급식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서울시공공급식가격품질분과위원회」에서 연 7~8회 식재료 가격, 품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여 자치구로 통보하고 있어,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서 별도로 공공급식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공공급식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6조에 따라 혁신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또는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달성되도록 준수되어야 하므로, 미구성·미개최된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개최하고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함. ○ 다만,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별 위원회 중 업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당 근거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기회가 연 2회 개최되어야 함에도 2022. 11. 기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영등포구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별 위원회는 2022. 11. 기준 총 43개이고, 이 중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위원회는 5개, 구성은 되었지만 2022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7개임. ○ 법령 또는 조례에 그 설치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법령 또는 조례 위반임. ○ 또한 법령 또는 조례에 그 개최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그에 따른 내용대로 개최되지 않는 것도 법령 또는 조례 위반임. 	
20	12.1. (목)	이규선	<p>[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영등포아트스퀘어, 독도체험관) 운영 및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 수탁업체인 (주)이엔애플리스(키즈앤키즈 등 운영)의 2020.2.3. 파산선고로 우리구에 약 3억 57백만원의 파산채권이 발생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에서 조성한 영등포아트스퀘어는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접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에서는 수탁업체의 파산채권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고, 장기간 문화 공간 미운영으로 구민의 문화 향유에 지장을 초래한 바,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공간은 보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공공문화 복지공간의 일부를 동북아역사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성된 독도체험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과 업무협약서의 협력내용 등이 제대로 준수되어,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공헌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자에 대한 공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21	12.1. (목)	이규선	<p>[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출산장려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교육과 상담 및 보충식품 공급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구 소득 수준과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율을 보면 대상 항목중 영양교육 및 상담과 정기적인 영양평가는 양호한 편이지만, 보충식품 공급항목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 국가적인 출생아 감소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업무공백 등이 대상자 선정에 큰 원인이 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보충식품 공급은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홍보를 강화해 신청자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대상 요건 등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야함. ○ 영양불량 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가 혜택을 모르거나,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2	12.1. (목)	이규선	<p>[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취급업소 관리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반인, 청소년 등 마약류 오남용 사례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 ○ 이에 따라,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사범수가 '18년 3,022명 대비 '21년 4,329명으로 43% 증가하였고, 전국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8년 143명 대비 '21년 450명으로, 315%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책이 요구됨. ○ 국민들이 심각한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생애주기별 마약류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힘써주기 바람. ○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법규안내 등 집중관리로,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	12.1. (목)	이규선	<p>[구상문학상 수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 등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구상문학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구상시인 기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시인의 작품이 심사위원단에서 결정되었으나, 수상 내정자의 고사로 금년에는 수상자 없음으로 결정된바 있음. ○ 수상자 선정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문학상 수상자 선정시 문예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운영위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고, ○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도 해당 규칙을 철저히 고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올해 '구상문학상 수상자는 없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우리구와 구상선생기념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심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강화하고 불미스러운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필요함.</p>	<p>사업회 입장과 수상자 선정 과정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람.</p>
24	12.1. (목)	이규선	<p>[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관련 취약계층 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시행하여 노숙인,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 대상을 노숙인이나 노인, 쪽방촌 등에 국한하지 말고, 1인가구, 청년 등으로 넓혀 다양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타 자치구의 경우 결핵관리 사업대상에 청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 우리 영등포도 대상 범위를 청년 또는 1인가구도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결핵검진 대상자 확대를 위한 가능한 계획 수립과 방안 모색을 요청함.
25	12.2. (금)	이규선	<p>[을질에 대한 방안 모색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구청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무보직 6급 이하 직원이 지각을 하여도 팀장이 제대로 지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나아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적을 받으면 불만을 품고 갑질 신고를 일삼으며 팀장을 왕따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상황임.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상급자에 대한 신고가 남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조직 내 “을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를 파악하여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왜곡된 결과로 명백하게 잘못 평가되고 있는 간부진 청렴도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간부진 청렴도평가가 지속되는 한, 을질 근절을 위한 무보직 6급 이하에 대한 청렴도평가도 실시할 것을 요구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상급자들이 부담감을 가짐으로써 소위 을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간부진 청렴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조사를 알린 적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알렸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소위 간부진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왜곡된 평가로 판단됨. ○ 이러한 을질 사례가 구청 조직 내에 비일비재하지만,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관리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됨. 	
26	12.2. (금)	이규선	<p>[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예방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2022년 상반기에도 관내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사건”이 2건 발생함. ○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감축하고 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인감증명 발급 관련 업무에 대한 사고는 재산상 큰 손실을 야기하고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사고 예방의 방법으로는 부정발급 시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단계에서 더욱 강력하게 그 시도를 차단하여야 함. ○ 현행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사망자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작성자가 필수적으로 확인 후 체크하여야 하는 양식으로 할 것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아가 행정안전부의 독려사항에 대해 우리 구의 경우에도 현황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함.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에 대응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및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27	12.1. (목)	이규선	<p>[흡연 과태료 부과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금연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음. ○비흡연자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다수 지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또한, 서울 자치구 중 흡연과태료 부과 금액이 제일 많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흡연 단속원을 증원하거나,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으로 금연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금연 교육 및 금연 지원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구민이 다수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함. ○흡연 단속 잘하는 영등포구가 아닌, 담배 청정 영등포로 거듭나길 기대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8	12.1. (목)	이규선	<p>[영등포전통시장 남문 노점 환경 개선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전통시장 남문 노점 판매품목으로 노숙자 음주 및 난동, 위생 문제 등으로 민원사항이 지속되어 왔음. ○ 전통시장법 제20조(상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업시설을 개선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전통시장은 6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영등포의 대표 시장으로, 폐쇄된 노점 11개소를 쾌적한 쇼핑환경 등 지역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점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남문 환경개선과 함께 상인의식 개혁 등 경영개선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며 영등포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29	12.1. (목)	이규선	<p>[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현황이 없음. ○ ‘모범음식점’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불만의 여지 존재함. ○ 코로나19 등에 따른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인해 우수 음식점에 대한 인증의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음식점’ 인증에 대해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신규 지정 업소 뿐만 아니라, 기존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 위생 등급제 지정’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30	12.1. (목)	임현호	<p>[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은 문화도시 영등포만들기 TF의 운영을 주관하면서 그 결과를 문화도시 시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센터가 단순히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0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기능을 수행함. ○ 그렇다면 문화도시 TF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문화도시센터의 역할임. ○ 그럼에도 문화도시센터가 아닌 구청 주무부서가 이를 주도하고 총괄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 추진 상황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임. ○ 또한 현재 추진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당초의 사업계획 대비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아 미집행된 부분을 2023년의 새로운 사업과 같이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로부터 지적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23년 평가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우려스러운 정황이 확인됨. ○ 한편 문화재단은 문화도시센터의 구성을 위해 3급 상당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현재 「영등포문화재 	<p>있도록 관련 규정과 직제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2023년 평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청과 문화도시센터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업의 집행을 제고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단 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 1에 따른 직제 및 기구표에는 해당 직제 및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별도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칙으로 정해진 바도 없음.</p> <p>○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조직도에는 현재 문화도시 정책팀만 나타나 있는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기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문화도시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아닌지 우려됨.</p>	
31	12.1. (목)	임헌호	<p>[주민자치회관 체력단련실 폐쇄 절차 부적정]</p> <p>○ 2022. 10. 간부회의에서 구청장 구두 요청사항으로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폐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자치회관 사용목적을 조사하기로 함.</p> <p>○ 2022. 10. 18. 구청에서 18개 동으로 공문을 보내 2023년 자치회관 체력단련실에 대한 예산이 중단 또는 축소될 수 있으니 운영 여건에 대하여 전면 검토하여 2022. 11. 30.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함.</p> <p>○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자치회관 기금이 고갈된 상황</p>	<p>○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운영 여건 검토 요청을 다시 시행하되, 예산의 중단 또는 삭감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함.</p> <p>○ 부득이하게 자치회관 체력단련실을 폐쇄하더라도, 해당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주민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p>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에서 구청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중단되면 운영도 중단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여 운영 중단할 것임을 회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운영 자체는 유지될 수 있고, 운영의 유지를 희망하기 때문에, 위 공문이 “예산 중단”인지, “예산 축소”인지 명확했으면 회신도 달라졌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위의 공문 요청은 명확성이 결여된 부적정한 행정이라 판단됨. ○ 또한 자치회관 체력단련실은 지역 주민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폐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이용 주민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함. ○ 자치회관 체력단련실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공간을 동행정 공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엄연히 주민을 위한 공간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임. 	
32	12.1. (목)	임헌호	<p>[양평2동 동청사 하자보수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2동 동청사는 공사기간을 2016. 12. 5. ~ 2018. 12. 14.로 하여 신축한 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하여(방수, 지붕의 경우 2018. 12. 20. ~ 2021. 12. 19.)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를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양평2동의 하자보수 요청을 영등포구청이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부적정한 행정으로 구의 예산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친 것이므로 그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준공 후 양평2동에서 영등포구청으로 요청한 하자보수 건은 관련 공문상 2019. 1.이후 2020. 4.까지 13건임에도, 영등포구청에서 하자보수 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나 제대로 하자보수가 처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제 하자보수 처리된 건은 2019. 4.이후 2019. 8.까지 8건에 불과함. ○ 또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체 수리한 경우가 2021. 11.부터 2022. 7.까지 총 4건, 소용비용은 총 917만 8000원에 달하며, 2023년 예산안에도 관련 시설보수에 관하여 옥상방수 5115만원, 1층 엘리베이터실 외부 보강(방수)공사 706만4000원 등 총 5821만4천원이 편성되었음. ○ 결국 준공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제대로 하자보수가 처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보증기간 만료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등 준공 후 하자보수 처리가 부적절하게 시행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되었음. 	<p>유사한 영등포구의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p>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3	12.1. (목)	임헌호	<p>[풋살장 소음 민원에 대한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2동에 영등포 SKY 풋살파크가 개장하고 새벽 2시까지 운영되면서 인근 성원아파트 등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수 차례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음. ○ 지난 10월 위 민원에 대하여 구청장 면담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전달되자 주민들은 행정지원국장에게 “구청장과 동행하여 민원을 청취 후 해결해 줄 것”, “구청장 불참 시 국·과장이 함께 민원인을 만나 청취 후 처리해 줄 것” 등을 요청함. ○ 이에 대하여 구청장 및 국·과장은 끝까지 민원 현장을 외면하였고 이후 11월에 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주민의 불만이 고조됨. ○ 결국 해당 풋살장은 폭 15미터에 불과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음에도 새벽 2시까지 운영되면서 소음을 유발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구청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서 민원사항의 중대함에 비해 구청의 민원행정이 미흡하여 부적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등의 중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적어도 국·과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4	12.5. (월)	임현호	<p>[부서재배치 건에 따른 절차적 문제 해소 후, 계획 재수립해야]</p> <p>[대학입시 정보센터이전 계획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10월18일문서번호 총무과-33825 자료에 의하면 별관J동에 부서재배치로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아트홀3층 작은도서관 폐관을 계획함. ○ 계획을 하기 전, 지역주민, 구의원, 주민센터 등에 의견 청취나, 설명도 없이 구청 자체적으로 폐쇄를 결정하고 이전 업무비까지 예산을 신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간은 지역주민의 이용 공간으로서 최소한 이용 주민 대상 설명회라도 진행했어야 했음. ○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묻지도 않고, 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이 사안은 절차적 문제가 있음. ○ 이에,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임. ○ 해당 계획의 절차상 문제를 해소한 후, 이전 계획을 재수립 해야 함.
35	12.1. (목)	최봉희	<p>[구청의 구의회 공무원 공무원증 발급 거부행태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청은 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이유로 구의회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제작을 거부함. ○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공무원증 발급 현황을 보았을때, 구의회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발급하지 않은 올해 발급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 ○ 2022년도부터 구의회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을 제작하지 않음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음. ○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이 독립된 것이 아니기에 구청의 주장은 부당함. ○ 구의회, 구청 모두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곳에만 지출이 있어야 함. ○ 공무원증 제작 기계가 천만원에 달함에도 이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꼴임. ○ 이와 같은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의 경우, 구청과 의회가 이중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이 적극 협력해야 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6	12.1. (목)	최봉희	<p>[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된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에 업체의 전화번호가 실제 업체의 전화번호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됨. ○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를 확인·수정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회계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본연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되어야 함. ○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엄격히 확인하여야 함. ○ 또한, 보조금 지출에 있어 해당 사회단체 사무국장 및 단체장의 결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환수조치를 비롯하여 책임자 처벌 또는 법적 조치가 엄중하게 뒤따라야 함. ○ 이를 위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업체의 업종, 주소, 전화번호가 적정하고 정확한지 명확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함.
37	12.1. (목)	최봉희	<p>[슬로건 제거 및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광고물, 시설물 등에 있었던 ‘탁트인 영등포’ 슬로건 제거 및 교체 총 62건에 약 96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 구를 상징하는 로고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상징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무분별하게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 상징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민선 구청장의 슬로건이 아닌 구를 상징하는 로고를 표시하여, 민선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이를 제거 및 교체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야 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선 구청장의 슬로건이 사용되어, 제거 및 교체되는 데에 적지 않은 금액이 쓰이는 것은 예산의 낭비로서 부적정한 사용임.</p>	
38	12.1. (목)	최봉희	<p>[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과다 및 비목 편성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29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 합계가 3억 9275만원에 달함. ○ 하지만 보조금이 지원된 사회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예산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원받은 사업의 내용을 살펴 보면 조직활성화비, 해당 단체의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등 비목 편성이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예산의 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내용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 ○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당 단체 본연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요구함.
39	12.1. (목)	최봉희	<p>[반장보상품 관련 예산 과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제11조(수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4(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따르면 구청장은 반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 5만원의 상여금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22년 영등포구 각 동의 반장에게는 설에 3만원, 추석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에 대한 보상품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비만큼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함.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각각 지급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각 동의 반장은 2022. 10. 기준 현원 총 3012명이고, 위와 같이 지급된 상품권은 총 1억 5209만원에 달함. ○ 하지만 반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거의 없고, 자신이 반장 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지급되는 보상품과 관련한 위와 같은 예산은 과다하여 부적정함. 	
40	12.1. (목)	최봉희	<p>[수의계약 운영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중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 집행이 일부 종류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됨. ○ 특히 해당 종류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에 다양한 업체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의 특성상 지역 소상공인에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리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게 고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운영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적정 요건을 갖춘 업체 목록을 정하여 고르게 집행하는 등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41	12.1. (목)	최봉희	<p>[장비 구매 시,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의약과에서 방사선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건소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장비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 보건소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기능상 큰 차이가

연 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장비는 일반 의원급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대기업 최신 장비로 고가의 제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함. ○또한, 고액의 장비 구매시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42	12.1. (목)	최봉희	<p>[소송 수행 업무 실적 제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영등포구가 당사자로서 수행한 민사·행정 소송 현황을 보면, 2020년 총 61건 중 승소 44건, 패소 8건, 2021년 총 67건 중 승소 44건, 패소 8건, 2022년 10. 31. 기준 총 45건 승소 37건, 패소 11건임. ○ 또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현황을 보면, 2020년 약 2억6381만원, 2021년 약 1억7832만원, 2022년 10. 31. 기준 약 3억 5454만원임. ○ 이는 패소율의 경우 과거 2년간 18%였다가 올해 30%로 크게 높아진 것이고, 패소에 따라 지급된 소송비용도 2020년에 비해 34%, 2021년에 비해 99% 급증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소율과 소송비용 지급 액수의 증가는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와 예산의 소모를 초래하므로 소송 업무의 실적을 제고하여야 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에 대한 소송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소송 내용과 결과에 따라 성과가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무에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음.